

의안번호	제2901호
의 결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우정욱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5. 2. 18.

고성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01
----------	------

발의연월일 : 2025. 2. 18.

발 의 자 : 우정욱,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의원(6인)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린이놀이기구 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위의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 나. 타 조례명 오류 정비 (안 제7조)
- 다. 포상에 대한 근거조항 수정(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6호

- 예고기간: 2025. 2. 18.(화) ~ 2025. 2. 24.(월)[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제7조제2항 중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표창)”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어
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및”을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으로, “종합 점검
하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로, “개인 및 단체”를 “개인·단체”로, “표창”
을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생략)	제4조(행위의 제한)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u>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고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표창) 군수는 <u>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u>	제10조(포상) ----- <u>어린이놀이 시설의 안전</u> ----- -- <u>종합적으로 점검하고,</u> ---- --- <u>개인·단체</u> ----- ---- 「고성군 포상 조례」에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따라 포상-----.

<삭 제>

관 계 법 령(발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3.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흡연·음주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
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해당 어린이놀이 시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